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서애리 변호사(한국예탁결제원)

I.

먼저, 남궁주현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하여 실무에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활용한 법률관계를 구상하고 설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내어 봤었는데 이번 발제를 통하여 신탁 일반론부터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근본적 한계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신탁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II.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신탁에 관한 일반론과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의의와 기능, 발행절차, 디지털화 필요성 및 현행법상의 발행 한계에 대하여 잘 정리 해주셨습니다. 특히 상품개발의 주체인 금융투자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신탁법의 취지에 맞추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심분 공감합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신탁법 또한 현실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신탁법은 수익증권의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고, 신탁행위로 정하는 경우 발행 대신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익증권의 발행 대신 전자등록하였을 경우의 수익자명부 작성·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수익증권(편의상 '신탁 수익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전자등록한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신탁 수익증권은 현실적으로 실물이 발행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될 일이 거의 없으며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것도 올해 6월말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이 최초였을 정도로 이전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도 전자등록 이외의 방법으로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법의 수익자명부 등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조문들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II.

교수님께서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신탁재산이 확대되어야 하고 수익증권의 디지털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에서 非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탁의 재산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는 일응 해결되었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반기는 바이나,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재산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한정), 금전채권(非금융법인이 위탁한 경우 한정), 무체재산권이고, 증권, 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담보권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조각투자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한데 이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은 부동산 신탁사만, 여타 재산은 해당 재산 신탁이 가능한 은행·증권·보험사 모두에게 허용하겠다고 하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를 발행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신탁업자들의 참여가 늘어야 하는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야만 한다면 신탁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IV.

한편, 교수님께서도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하신대로 시장참여자들이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만약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업자가 필요하다면, 조각투자 사업자가 직접 신탁업 인가를 신청하든 기존 신탁업자를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단위가 포괄적인 상황¹⁾에서 조각투자 사업자가 직접 인가를 신청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단위의 세분화 및 필요요건 정비를 통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제도 활용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V.

오늘 남궁주현 교수님의 발제를 통하여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각투자 등과 관련하여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단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각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유형으로 나뉘며, 각 단위별로 최저자기자본이나 필요 전문인력이 상이합니다. ①신탁 가능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신탁, ②금전에 한하는 금전신탁, ③금전을 뺀 나머지 모든 재산을 신탁 대상으로 하는 비금전신탁, ④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으로 구별되어, '증권'만을 신탁 대상으로 하더라도 인가단위는 ②비금전신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최저자기자본 120억, 증권운용전문인력 3명,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명 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